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년도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매년 10~11월에 확정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할 수 없는 등 환류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연구소·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자체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 기한 조정(안 제4조제2항)

나. 법 제29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탁기관 요건 등 마련(안 제4조의2)

다.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주체를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로 조정(안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재부 등과 협의되었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1. 07. ~ 12. 16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시행계획의”를 “시행계획 추진실적”으로, “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작성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”를 “2월말까지 위원회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”를 “종합하여”로 한다.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평가 연구의 위탁) ① 국가는 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제21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
4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
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시행계획의 평가 등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은</u>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4조(시행계획의 평가 등) ① <u>위원회는</u> ----- ----- <u>시행계획 추진실적</u> ----- <u>작성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.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<u>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월 말까지 위원회에</u> ----- --.
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</u>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<u>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</u>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③ <u>위원회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종합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4조의2(평가 연구의 위탁) ①

국가는 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제21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
4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
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67